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

발의연월일: 2024. 6. 4.

발 의 자: 박해철·박선원·김영배

박희승 · 강선우 · 서영교

김태선 • 이수진 • 김정호

윤종군 · 송옥주 · 허성무

김주영 • 박홍배 의원

(14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다만, 생산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위해 사용자가 일정 기간 1주 간 48시간 또는 52시간, 1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탄력 근로제도를 활용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해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1주 간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의 계산에 있어, 1주 간의 합계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의 합계도 연장근로시간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여 왔음.

이는 소위 '크런치 모드(Crunch mode)'와 같이,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중적 근로를 방지하기 위함임.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현행법에서 연장근로에 1주 간의 한도만 두고 있을 뿐이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쉬지 않고 하루 21.5시간의 '몰아치기 밤 샘노동'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어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임.

이에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3조, 제54조).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제50조"를 "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의 합은 제1항에 따라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110조제1호 중 "제53조제1항·제2항"을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4항 본문·제7항"을 "제5항 본문·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제53조제5항"을 "제53조제6항"으로 한다.

제114조제1호 중 "제53조제4항"을 "제53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식 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근로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u>제50조</u> 의 근	<u>제50</u> 조제 <u>1항</u>
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u><신 설></u>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제50
	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
	과한 근로시간의 합은 제1항에
	따라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u>②</u> ~ <u>⑦</u> (생 략)	<u>③</u> ~ <u>⑧</u> (현행 제2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제54조(휴게) ①・② (생 략)	제54조(휴게) ①・② (현행과 같
	<u> </u>
<u><신 설></u>	③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
	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
	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10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	1

조, 제50	조, 제5]	L조의27	세2항,
제52조제2	2항제1호	., <u>제53</u>	조제1
<u>항 • 제2형</u>	·, 같은	조 <u>제4</u>	항 본
<u>문 • 제7형</u>	_, 제54	조, 제	55조,
제59조제2	2항, 제	60조제	1항・
제2항 • 저	4항 및	제5항,	제64
조제1항,	제69조,	제70:	조제1
항 · 제2힝	+, 제712	조, 제7	4조제
1항부터	제5항까	·지, 제	75조,
제78조부1	터 제803	조까지,	제82
조, 제833	조 및 저	네104조	제2항
을 위반힌	사		

-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 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 7조, <u>제53조제4항</u> 단서, 제67 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 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 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0	/ x1J	コと)
۷.	(생	략)

	<u>제53조</u>
	제1항부터 제3항까지
	<u>제5항 본문·제8항</u>
2.	제53조제6항
제11	4조(벌칙)
1.	
	<u>제53조제5항</u>
2.	(현행과 같음)